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157
------------	--------

제출년월일 : 2025.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조례 제명 및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 존속기한 연장, 기금 운용규정 등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및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
- 나. 기금 존속기한 연장
- 다. 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운영 규정 정비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지차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내용), 제11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 3) 「지방회계법」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4)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23조의4(휴학)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의: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5. 10. 10.~10. 30. (제출된 의견 있음)

- 환경미화원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타 조례 병행 정비
- 위원 수 및 당연직·민간위원 비율 조정

2)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 수용

#### [부패영향평가결과]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선의견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이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금의 대여대상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로 수정 반영 권고

4)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서  
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환경미화원 자녀들”을 “환경공무관 자녀들”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을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을 “환경공무관 자  
녀학자금”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환경공무관 자녀학자  
금 대여기금”으로 한다.

제2조의2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예산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를 각각 제3조의5부터 제3조의8까지로 하고, 제3  
조의3 및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 인정되는 경우

제3조의5(종전의 제3조의3)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6(종전의 제3조의4)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7(종전의 제3조의5)제1항 중 “업무 관련”을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업무 관련”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 입학하거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대여제한대상)”을 “(대여제한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하고, “대여대상자녀”를 “대여대상 자녀”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을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제1호에 따라 휴학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채권보전)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따라 채용된 환경공무관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23조제3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u> <u>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u>	<u>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u> <u>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u>환경미화원</u>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u>환경미화원</u>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u>환경미화원</u>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u>환경미화원</u>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2. (생략)      ② (생략)</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5년 12월 31</u> 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p>	<p>제1조(목적) -----      ----- <u>환경공무관</u> 자녀      들-----      - <u>환경공무관</u> 자녀학자금 -----      -----      -----      -----.      제2조(기금조성) ① -----      --- <u>환경공무관</u> 자녀학자금---      -----      --- <u>환경공무관</u> 자녀학자금 대      여기금-----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30년 12월 31일</u>-      -----. -----      -----      -----</p>

<p>장할 수 있다.</p> <p>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u>환경미화원</u>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3. (생략)</p> <p>② ~ ③(생략)</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u>예산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u></p> <p>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u>2명</u></p> <p>⑤ (생략)</p> <p>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p>	<p>-----.</p> <p>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p> <p>-----</p> <p>-----</p> <p>- <u>환경공무관</u> -----</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1. <u>예산정책과장</u></p> <p>2. -----</p> <p>----- <u>3명</u></p> <p>⑤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	---

해촉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 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제3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4(회의)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② -----  
-----  
-----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삭제>

<삭제>

제3조의6(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p><u>제3조의5(간사 및 수당) ① 위원</u> 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업무</u> <u>관련</u> 담당팀장으로 한다.</p>	<p><u>제3조의7(간사 및 수당) ① -----</u> ----- ----- <u>환경공</u> <u>무관 자녀학자금 업무 관련</u> --- -----.</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3조의6 (생 략)</u></p>	<p><u>제3조의8 (현행 제3조의6과 같음)</u></p>
<p><u>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u> (생 략)</p>	<p><u>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 (현</u> 행과 같음)</p>
<p>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② ----- ----- <u>「지방회계법」</u> ----- ----- ----- ----- ----- ----- -----. -----.</p>
<p><u>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u> <u>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u> <u>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u> <u>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u> <u>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u> <u>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u></p>	<p><u>제5조(대여대상) -----</u> ----- <u>환경</u> <u>공무관</u>----- <u>「고등</u> <u>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u> <u>까지의 학교에 입학하거나</u> --- ----- -----. -----.</p>
<p><u>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p>	<p><u>제6조(대여제한 대상) -----</u> ----- -----.</p>
<p>1. (생 략)</p> <p>2. 부부가 <u>환경미화원</u>인 경우</p>	<p>1. (현행과 같음)</p> <p>2. ----- <u>환경공무관</u>-----</p>

<p>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p> <p>3. (생 략)</p> <p>4. <u>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u></p> <p>5. (생 략)</p> <p>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생 략) ② <u>환경미화원</u> 1명에 대한 <u>대여대상자녀는</u> 모든 자녀로 하 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 치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u>군입대자는 예외로 함</u></p> <p>4. (생 략)</p> <p>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 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p>	<p>----- --</p> <p>3. (현행과 같음)</p> <p>4. <u>(삭 제)</u></p> <p>5. (현행과 같음)</p> <p>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u>환경공무관</u> ----- <u>대여 대상 자녀</u>----- ----- -----.</p> <p>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제 1호에 따라 휴학한 경우는 예 외로 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제11조(채권보전) 구청장은 이 조 례에 따라 학자금을 대여할 경</p>
---	--

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 연수 10  
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  
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  
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  
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  
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  
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에는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  
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발생요인: 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1명 추가에 따른 비용발생 예상
- 관련조문: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환경녹지국 깨끗한마포과 장민호
연락처	02-3153-9204